

의안번호	제 48 호
의결연월일	2009. 11. 26.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신주범 의원 외 1
발의연월일	2009. 11. 12.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9 ~ 48
----------	-----------

발의연월일	2009. 11. 12.
발 의 자	신주범 의원 외 1

1. 제안이유

- 관내 유치원에 대하여 교육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치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도시·농촌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치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 **보조사업의 범위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2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과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신설 및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함(안 제2조제2호의2·제3호·제4호·제8호,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다. 그 밖에

(1) 입법예고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으로 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교육과정 운영사업”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제4조제1항 중 “초·중학교장”을 “유치원장,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u>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u>」에 의하여 거창군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u>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u>」에 따라 「<u>유아교육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u>초·중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u>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u> ----- ----- ---</p>
<p>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본문 생략) 1. ~ 2. (생략) <신설></p>	<p>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본문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2의2. <u>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u></p>
<p>3. <u>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u></p>	<p>3. <u>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u></p>
<p>4. 지역주민을 위한 <u>교육과정 운영사업</u></p>	<p>4. ----- <u>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u></p>
<p>5. ~ 6. (생략) <신설></p>	<p>5. ~ 6. (현행과 같음) 7. <u>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u></p>
<p>7. (생략)</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u>초·중학교</u> 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p> <p>② (생 략)</p> <p>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u>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u>」 및 「<u>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u>」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 ----- ----- <u>유치원장,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준용) ----- ----- ----- 「<u>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u>」 ----- -----.</p>

관계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4.12.30>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1.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⑤시·도교육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 2000.12.30>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0.1.28, 2006.12.30>

⑦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82.4.3]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07.12.28] [대통령령 제20464호, 2007.12.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9.17, 2000.12.27, 2007.12.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7조 (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8]

□ 유아교육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 (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3.24,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5.3.24>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2008.2.29>

[본조신설 2000.1.28]